

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당사 주주총회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- 아 래 -

1. 개요

일시	2026년 04월 15일 오후 2시
장소	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8, 4층(삼성동,조영빌딩) 본점 회의실

2. 주주 참석률

총발행 주식수	3,300,000 주
의결권 행사 주식수	2,160,000 주
참석률	65.4%

3. 안건별 결과

안건	찬성	반대	결과
제3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	2,160,000주 (100%)	-	가결

4. 변경 사항

정관일부 변경의 건

5. 주요 변경 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4조 (공고 방법)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"한국경제신문"에 게재한다.</p> <p>제10조 (신주의 인수권) 2. 당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1.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.</p> <p>제18조 (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) 1.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제29조 (주주총회의 결의 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한다.</p> <p>제32조 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2. 이사 및 감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제42조 2 (이사회 심의·의결사항) 14. 이사회규정, 임원보수규정, 임원퇴직금규정, 내부통제규정, 자체감사규정, 위험관리 규정 및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</p> <p>제43조 (이사회 결의 방법)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/p>	<p>제4조 (공고 방법)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araaasset.com)에 게재한다.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"한국경제신문"에 게재한다.</p> <p>제10조 (신주의 인수권) 2. 당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 (주주명부의 기준일) 1항 삭제</p> <p>제18조 (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) 1.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제29조 (주주총회의 결의 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제32조 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2. 이사 및 감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선임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제42조 2 (이사회 심의·의결사항) 14. 이사회규정, 임원보수규정, 임원퇴직금규정, 내부통제규정의 수립 및 감독, 자체감사규정, 위험관리 규정의 수립 및 감독,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 15. 이사회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 감독 [2026.4.15 개정]</p> <p>제43조 (이사회 결의 방법)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</p>

<p>제47조 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 1.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) 대차대조표 2) 손익계산서 3)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</p>	<p>제47조 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 1.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(심의 및 의결)을 얻어야 한다. 1) 대차대조표 2) 손익계산서 3)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</p>
--	--

아라자산운용 주식회사